

#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안

의안  
번호 2032

제출년월일 : 2010 . 11. 3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정이유

- 교통안전법 제23조에 의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질서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
-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이 높은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
-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함으로써 『교통안전도시』 안산의 이미지 정착

## 주요내용

-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)
- 운영시간은 매주 월 ~ 금요일 09:00 ~ 18:00으로 규정(안 제5조)
- 이용료는 무료로 함(안 제6조)
-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음(안 제8조)
-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했을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(안 제9조)

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없음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150,000천원

사전예고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0. 9. 20. ~ 2010. 10. 11.(21일간)

#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이론학습과 현장 체험을 함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교통안전체험교육장(이하 “체험교육장”이라 한다)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3번지에 둔다.

**제3조(시설)** 체험교육장에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.

1. 실내교육장 : 전시관, 영상관, 멀티미디어실, 체험관 등
2. 실외교육장 : 횡단보도 안전교육시설, 교통신호기 교육시설 등
3. 그 밖의 시설 : 관리사무실, 강사실 등

**제4조(사업)** 체험교육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통안전 교육
2.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
3.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
4. 그 밖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운영시간 등)** ① 체험교육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(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)

② 체험교육장의 휴장일은 토요일,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이용료 등)**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장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.

**제7조(이용자의 제한)**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람에게는 체험교육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음주를 한 사람
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
3. 인화물질·위험물·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
4.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5.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

**제8조(위탁운영)** ①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체험교육장의 관리·운

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관리·운영 등 체험교육장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9조(손해배상)**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교육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자원봉사자)**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준용)** 체험교육장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U-정보센터
입 안	실과장 직위·성명	U-정보센터 김호훈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통안전담당 원익희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현일 (행정 2823)

#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03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0. 11. 3.  
제안자 : 도시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운영시간에 대한 동절기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이용자의 제한에 대한 나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·운영의 기관을 명확히 하고 민간 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동절기의 기간을 11.1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함.(안 제5조)
- 6세를 만5세로 함.(안 제7조)
- 위탁운영의 기관에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을 추가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정함.(안 제8조)

#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체험교육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단, 동절기(11.1일~ 2월말)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.

제7조 제2호의 6세를 만5세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산시 에서 출자한 법인과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체험교육장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수탁자는 관리·운영 등 체험교육장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.

# 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<b>제5조(운영시간 등) ①</b> 체험교육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(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)</p> <p>② (생략) ③ (생략)</p> <p><b>제7조(이용자의 제한) (생략)</b></p> <p>1. 생략 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<u>6세</u> 이하의 어린이 3~5. 생략</p> <p><b>제8조(위탁운영) ①</b>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체험교육장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<u>보조</u>할 수 있다. ④ 신설</p>	<p><b>제5조(운영시간 등) ①</b> 체험교육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단, 동절기(11.1일~ 2월말)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 ③ (생략)</p> <p><b>제7조(이용자의 제한) (생략)</b></p> <p>1. 생략 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<u>만5세</u> 이하의 어린이 3~5. 생략</p> <p><b>제8조(위탁운영) ①</b>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<u>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</u>과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체험교육장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<u>지원</u>할 수 있다. ④ <u>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.</u></p>